# 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8)

—권8, 12:16-13:07을 중심으로—

조은주*

요 약

이 글은 점토구결자료 『瑜伽師地論』 권8의 12:16-13:07 부분의 잠정적인 해독안을 제시한 것이다.

핵심어: 유가사지론, 점토구결

이 글은 『瑜伽師地論』 권8의 일부(12:16-13:07)에 대하여 해독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十不善業 중 欲邪行에 해당되는 부분이다.

구체적인 해독안은 아래와 같이 A, B, C, D, E 다섯 항목으로 나누어 해독안을 제시한다.

A: 원문에 현토된 점토와 부호를 판독한 결과.
B 점토에 대응하는 자토 표시.
C: 자토석독구결문으로 재구성한 결과.
D: 구결문에 의거하여 현대 국어로 축자역한 결과.

*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.

E: 해당 부분의 동국대학교 역경원 번역.

<유가08 12:16-17>

A: 有治罰[51(·)]者[23~33(··)]謂諸國王[31(·)]若執理者[31(·),22~32(·)]以{55(·)}治罰[42(·)]法[34(·),=24(·)]而[43(·)]守護[43(ㅣ)]故[55(·)]

B: 有治罰[ㅣ]者[xㅅㄱ]謂諸國王[ㅅ]若執理者[ㅅ,ㅢ]以治罰[ㄴ]法[ㄹ,ᄋᆞ]而[ᄭᅮ]守護[xᄭᅮ]故[ᄉᆞ]

C: 有治罰(ㅢ)ㅣ{者}xㅅㄱ 謂 諸 國王ㅅ 若 執理者ㅅㅢ 治罰ㄴ 法ㄹ {以}ᄋᆞ 而ᄭᅮ 守護xᄭᅮ{故}ᄉᆞ

D: 有治罰이다 하는 것은, 즉 모든 국왕과 執理者가 治罰의 法을 써 守護하는 까닭이며

E: 다스리는 형벌이 있다 함은 모든 국왕이거나 일 맡은 이가 형벌을 다스리는 법으로써 수호하기 때문이며,

<유가08 12:17-18>

A: 有障导[=51(·)]者[23~33(··)]謂[1]守門者[23(·)]所[역독선]守護[33(\),43(ㅣ)]故[51(·)]

B: 有障导[ㅣ]者[xㅅㄱ]謂守門者[ㅋ]所守護[ㅅㄱ,xᄭᅮ]故[ㅣ]

C: 有障导(ㅢ)ㅣ{者}xㅅㄱ 謂 守門者ㅋ 守護ㅅㄱ 所xᄭᅮ{故}ㅣ

D: 有障导다 하는 것은, 즉 守門者의 守護한 바인 까닭이다.

E: 장애가 있다 함은 문지기가 수호하게 되기 때문이다.

<유가08 12:18-19>

A: 此[42(·)]中[44(·)]略[45(·)]顯未適他者[23(·)]三種[42(·)?]守護[34(·),51(:)#51(ㅣ)]

---

1) '謂'자의 '月'의 아래 두 획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아 '日'처럼 보인다.

B: 此[ㄴ]中[十]略[ㅋ]顯未適他者[ㅋ]三種[ㄴ]守護[乙,x ㅣ]
C: 此ㄴ 中(ㅋ)十 略ㅋ 未適他者ㅋ 三種ㄴ 守護乙 顯x ㅣ
D: 이 가운데에 간략히 未適他者의 세 가지의 守護를 나타내는 것이다.
E: 이 중에서, 아직 다른 이에게 시집가지 않은 이를 세 가지로 수호한다 함을 간략하게 나타냈나니,

<유가08 12:19-20>
A: 一尊重[53(·)]{32(·)}至親[53(·)]眷屬[53(·)]自己[53(·),+15~25(-),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1(·)]
B: 一尊重[亠]至親[亠]眷屬[亠]自己[亠,ノ尸,ㅋ]之所守護[ノ尸,人]
C: 一 尊重亠 至親亠 眷屬亠 自己亠ノ尸ㅋ{之} 守護ノ尸 所人
D: 첫째 尊重이니 至親이니 眷屬이니 自己니 하는 이의 守護하는 바와
E: 첫째는 존중할 이와 가까운 겨레붙이와 권속들과 자기가 수호함이요,

<유가08 12:20-20>
A: 二王[53(·)]執理家[53(·),+15~25(-),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1(·)]
B: 二王[亠]執理家[亠,ノ尸,ㅋ]之所守護[ノ尸,人]
C: 二 王亠 執理家亠ノ尸ㅋ{之} 守護ノ尸 所人
D: 둘째 왕이니 執理家이니 하는 이의 守護하는 바와
E: 둘째는 왕과 일맡은 이가 수호함이요,

<유가08 12:20-21>
A: 三諸守門者[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1(·),51(·)]
B: 三諸守門者[ㅋ]之所守護[ノ尸,人,ㅣ]
C: 三 諸 守門者ㅋ{之} 守護ノ尸 所人(刂)ㅣ
D: 셋째 모든 守門者의 守護하는 바이다.
E: 셋째는 문지기가 수호하게 되는 것이다.

<유가08 12:21-22>

A: 他妻妾[51(·)]者[23~33(··)]謂已[24(·)]適他[34(·),54~55(.·)]

B: 他妻妾[ㅣ]者[xㅅㄱ]謂已[ᄉᆞ]適他[ㄹ,xᄀᆞᆫ]

C: 他妻妾(ㅢ)ㅣ{者}xㅅㄱ 謂 已ᄉᆞ 他ㄹ 適xᄀᆞᆫ

D: 他妻妾이다 하는 것은, 즉 이미 남을 適한 이이며

E: 다른 이의 아내와 첩이라 함은 이미 다른 이에게 시집 간 이를 말하며,

<유가08 12:22-23>

A: 他所攝[51(·)]者[23~33(··)]謂卽未適他[34(·)?,22~32(·),22(·)]爲三守護[23(·)]之所守護[+15~25(-),34(·),32~42(·),25(/),55(·)]

B: 他所攝[ㅣ]者[xㅅㄱ]謂卽未適他[ㄹ,ㅢ,ᄒᆞ]爲三守護[ᄅᆞ]之所守護[ㅅᄆᆞ,ㄹ,ㅅ,ㅅxᄉᆞᆷ,ᄀᆞᆫ]

C: 他所攝(ㅢ)ㅣ{者}xㅅㄱ 謂 卽 他ㄹ 適(ㅅᄆᆞ) 未ㅢ(ㅅ)ᄒᆞ 三 守護ᄅᆞ{之} 守護ㅅᄆᆞ 所ㄹ 爲ㅅㅅxᄉᆞᆷᄀᆞᆫ

D: 他所攝이다 하는 것은, 즉 곧 남을 適하지 아니하여 세 守護의 守護하는 바를 받는 것이며

E: 다른 이가 포섭하는 바라 함은 아직 다른 이에게 시집가지 않은 이로서 세 가지 수호로써 수호 받는 이를 말하며,

<유가08 12:23-13:01>

A: 若由兇詐[34(·),=24(·),51(·)]者[23~33(··)]謂矯亂已[22(·)]而行[역독선]邪行[34(·),15~25(/),55(·)]

B: 若由兇詐[ㄹ,ᄉᆞ,ㅣ]者[xㅅㄱ]謂矯亂已[ᄒᆞ]而行邪行[ㄹ,ㅅxᄉᆞᆷ,ᄀᆞᆫ]

C: 若 兇詐ㄹ 由ᄉᆞㅣ{者}xㅅㄱ 謂 矯亂(ㅅᄆᆞ) 已(ᄉᆞㅅ)ᄒᆞ 而 邪行ㄹ 行ㅅxᄉᆞᆷᄀᆞᆫ

D: (또한) 兇詐를 말미암다 하는 것은, 즉 矯亂하고 나서 邪行을 行하

는 것이며

E: 음흉한 속임수 때문이라 함은 어수선하게 어지럽힌 뒤에 사뢴 행을 행함을 말하며,

<유가08 13:01-02>

A: 若由强力[34(·)?,=24(·),51(·)]者[23~33(··)]謂對父母等[34(/),22(·)]公然[45(·)]强逼[15~25(/),55(·)]

B: 若由强力[乙,ㅔ,ㅣ]者[xㅅㄱ]謂對父母等[ㄴㄱ乙,ㅋ]公然[ㅎ]强逼[ㄴx矣,分]

C: 若 强力乙 由ㅔㅣ{者}xㅅㄱ 謂 父母等ㄴㄱ乙 對(ㄴ)ㅋ 公然ㅎ 强逼ㄴx矣分

D: (또한) 强力을 말미암다 하는 것은, 즉 부모들을 對하여 공공연히 强逼하는 것이며

E: 억센 힘 때문이라 함은 부모들에게 대하여 공공연하게 억지로 남의 의사를 꺾는 것을 말하며,

<유가08 13:02-03>

A: 若由隱伏[34(·),24(·),51(·)]者[23~33(··)]謂不對彼[34(·)?,22(·)]竊[32~42(·)]相[21(·)]欣欲[15~25(/),55(·)]

B: 若由隱伏[乙,ㅔ,ㅣ]者[xㅅㄱ]謂不對彼[乙,ㅋ]竊[ㅅ]相[ㄱ]欣欲[ㄴx矣,分]

C: 若 隱伏乙 由ㅔㅣ{者}xㅅㄱ 謂 彼乙 對(ㄴ尸) 不(ㅎㄴ)ㅋ[2] 竊ㅅ[3] 相ㄱ[4] 欣欲ㄴx矣分

D: (또한) 隱伏을 말미암다 하는 것은, 즉 그들을 對하지 아니하여 몰

2) '不對(ㄴ)ㅋ'일 가능성도 있다.

3) 15세기 언해 자료에 나오는 '그스기'에 대응하는 표기로 보인다.

4) 衆乙 與七 相ㄱ 雜住ㄴ尸 不ㅎㄴ ㅋ<유가20, 29:06-08>.

래 서로 欣欲하는 것이며

E: 숨어 엎드려서라 함은 그들에게 상대하여 함이 아님을 말한다. 몰래 서로 기뻐하며 바라면서

<유가08 13:03-03>

A: 而[43(·)?]行欲行[34(·),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兩兩交會[15~25(/),55(·)]

B: 而[ᄭ]行欲行[ㄱ,ㅅx矣,ㅣ]者[xㅅㄱ]謂兩兩交會[ㅅx矣,ㅁ]

C: 而ᄭ 欲行ㄱ 行ㅅx矣ㅣ{者}xㅅㄱ 謂 兩兩交會ㅅx矣ㅁ

D: 그리고 欲行을 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, 즉 兩兩交會하는 것이며

E: 음욕을 행한다 함은 둘이가 맞아서 교합함을 말하며,

<유가08 13:03-05>

A: 卽於此事[=44(·),구결자(十)][5]非理欲心[43(·)]而行邪行[34(·),15~25(/),51(·)]者[23~33(··)]謂於非道[53(·)]非處[53(·)]非時[53(·),24(\),44(·)]自[23(·)]妻妾[23(·)]所[44(·)]而[43(·)]爲罪失[34(·),25(/),51(·),삐침선(22~32,\)]

B: 卽於此事[十]非理欲心[ᄭ]而行邪行[ㄱ,ㅅx矣,ㅣ]者[xㅅㄱ]謂於非道[ㅗ]非處[ㅗ]非時[ㅗ,ㅅ令,十]自[ㅋ]妻妾[ㅋ]所[十]而[ᄭ]爲罪失[ㄱ,ㅅx矣,ㅣ]

C: 卽 {於}此 事十 非理欲心ᄭ 而 邪行ㄱ 行ㅅx矣ㅣ{者}xㅅㄱ 謂 {於}非道ㅗ 非處ㅗ 非時ㅗㅅ令十 自ㅋ 妻妾ㅋ{所}十 而ᄭ 罪失ㄱ {爲}ㅅx矣ㅣ

D: 곧 이 일에 非理欲心으로 邪行을 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, 즉 非道이니 非處이니 非時이니 하는 것에, 자기의 妻妾에게 罪失을 하

5) 점토가 한자의 검은 획 가까이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아서 구결자 '十'를 기입한 듯하다.

는 것이다.

E: 곧 이 일에 도리가 아닌데 욕심으로써 사뙨 행을 행한다 함은 길이 아니고[非道] 처소가 아니고[非處] 때가 아닐 적[非時]에 자기의 아내와 첩에 대하여 잘못을 저지름을 말한다.

<유가08 13:06-07>

A: 此[42(·)]中[22(·)[6],42(·)]略義[22~32(·)]者[15~25(-),23~33(·)]謂略[45(·)]顯示若彼所行[31(·)]若行差別[31(·)]若欲邪行[31(·),34(·),33~43(:),경계선]應知[42(\),51(·)]

B: 此[ㄴ]中[ㅋ,ㄴ]略義[ㅐ]者[ㄹ,ㅅㄱ]謂略[ㅎ]顯示若彼所行[ㅅ]若行差別[ㅅ]若欲邪行[ㅅ,ㄹ,x印]應知[ノ十ㄴ,ㅣ]

C: 此ㄴ 中ㅋㄴ 略義ㅐ{者}ㄹㅅㄱ 謂 略ㅎ 若 彼 所行ㅅ 若 行差別ㅅ 若 欲邪行ㅅㄹ 顯示x印 知ノ十{應}ㄴㅣ

D: 이 중의 略義인 것은, 즉 간략히 그의 所行과 行差別과 欲邪行을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, 알아야 할 것이다.

E: 이 중에서 간략한 이치라 함은, 간략하게 그의 행하는 바와 행의 차별과 음욕의 사뙨 행을 나타내 보이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.

## 참고문헌

김영욱(2001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(點土)의 해독 방법 연구」, 『구결연구』 7, 구결학회, pp. 57-77.

박진호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2)」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pp. 216-231.

서민욱(2004), 「'如'에 호응하는 점토에 대하여」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pp. 175-220.

이승재(2001), 「『유가사지론』 각필 부호구결의 해독을 위하여」, 『국어연구의

6) 점토가 획의 끝에 기입되어 있어 잘 보이지 않는다.

이론과 살제』(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), 태학사, pp. 229-250.
이용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3)」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pp. 233-247.
이전경(2004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4)」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pp. 221-243.
장경준(2002), 「點土釋讀口訣 자료에 기입된 口訣字와 대응 口訣點에 대하여-『유가사지론』 권5, 8을 대상으로-」, 『구결연구』 9, 구결학회, pp. 205-225.
장경준(2004가), 「『유가사지론』 점토석독구결 해독 연구(1)」, 『구결연구』 12, 구결학회, pp. 192-212.
장경준(2004나), 「구결점의 현토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」, 『구결연구』 13, 구결학회, pp. 149-174.

〔153-0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59-28번지 일성빌딜 4층〕
E-mail: aemiya1@hanmail.net
접수일자: 2005. 6. 30.
게재결정: 2005. 7. 30.

# A Study on Cipher in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

-Focusing on vol. Ⅷ.12:16-13:07-

Cho, Eun-Joo

This paper presents a tentative decoding and interpretation of cipher kugyols incribed in the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.

Key words: Yogacārabūṃmi(瑜伽師地論), cipher kugyol(點土釋讀口訣)